

1. 의결주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신청서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서식, 별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신청 등)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 신청서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2.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변경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 사유서
3. 국제물류진흥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변경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

수산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사유서
3. 국제물류진흥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

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4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8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증특례 변경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7조(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시허가서 사본
5.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신청)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3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정보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신청서

(앞쪽)

신청 기관	① 기관명(기관장명)		③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공고기간			
	② 공동신청 여부					
	④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열람기간		⑤ 공청회 개최일			
국제 물류 진흥 지역 발전 계획	⑥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					
	⑦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위치					
	⑧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면적					
	⑨ 규제 특례 등 의 내용	규제 특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⑩ 5년간 총사업비 (원)	1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2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3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4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5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⑪ 국제물류진흥지역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사항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8조제7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

신청 기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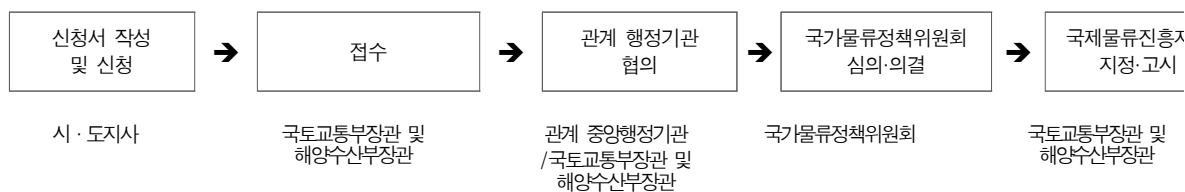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기관 제출서류 (지정 시)	1.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1부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1부 3. 국제물류진흥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신청기관 제출서류 (변경지정 시)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1부 2.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및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변경 사유서 1부 3. 국제물류진흥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변경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신청기관 제출서류 (지정해제 시)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1부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사유서 1부 3. 국제물류진흥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부 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작성요령 / 제출 방식

< 작성요령 >

- ① 기관명: 신청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
- ② 공동신청 여부: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 표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표시
- ③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공고기간: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
(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④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열람기간: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
(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⑤ 공청회 개최일: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예시: 년 월 일)
- ⑥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은 시·도지사가 정하되 "국제물류진흥지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함.
- ⑦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위치: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고, 첨부 서류로 국제물류진흥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해야 함

< 예 시 >

- ○○○도 ○○시 ○○동 ○○번지 일원
 - ○○○도 ○○군 ○○면 ○○리·○○리·○○리 일원
 - ○○○도 ○○군 ○○면 ○○리·○○리 ○○번지 외 필지
- ⑧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면적: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총 면적을 제곱미터(m^2) 또는 제곱킬로미터(km^2) 단위로 기재
 - ⑨ 규제특례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규제 등
 - 1) 규제특례: 법 제17조, 법제18조 및 법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적용받으려는 조문 및 특례 내용
 - 2) 규제 신속확인: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주요 내용
 - 3) 실증특례: 법 제18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 4) 임시허가: 법 제21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주요 내용
 - ⑩ 5년간 총사업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변경 후 5년간 투입하거나 해제 전 최근 5년간 투입한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기재(단위: 억원)
 - ⑪ 국제물류진흥지역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사항: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받은 후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기재

< 제출 방식 >

별도 요청한 서면자료 외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신청서 및 붙임 서류가 모두 포함된 전자파일[전자문서 첨부물, 시디(CD) 등 저장매체]를 함께 제출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물류사업등	명칭		
	유형	[] 물류 신기술 [] 물류 기반시설 [] 서비스 [] 기타	
	주요 내용		
소관 부처·기관 및 관련 허가 등 (선택적 기재)	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상되는 허가 등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물류사업등에 대한 설명서 1부 2.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류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해당 법조문	처리 절차	서식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규제 신속확인 신청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법 제17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신청서 사본과 첨부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17조제4항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허가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허가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30일 이내에 허가등의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봄)	
법 제17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신청인에게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즉시 통보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물류사업등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사항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적 인

해양수산부장관

적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증특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물류사업등	명칭		
	유형	[] 물류 신기술 [] 물류 기반시설 [] 서비스 [] 기타	
	주요내용		
신청 사유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내용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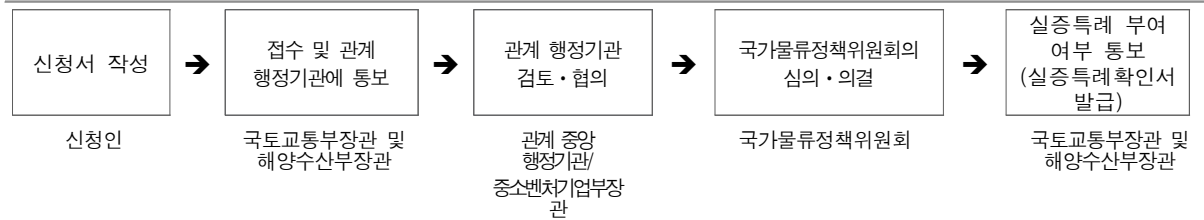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2.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증특례확인서

제 호		실증특례 확인 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확인내용	명칭		
	주요 내용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조건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 인

해양수산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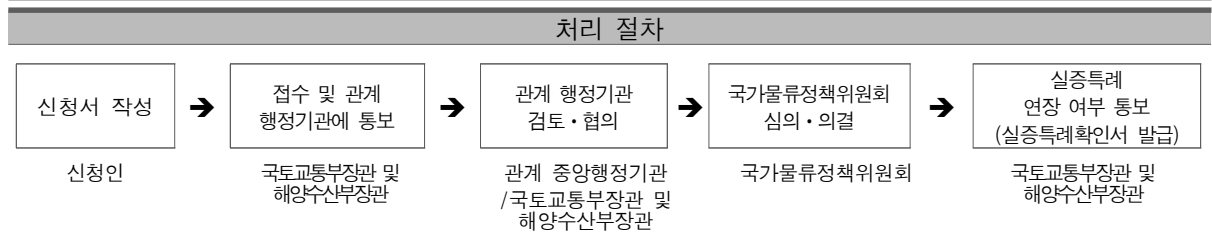
직 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물류사업 등	명칭		
	유형	[] 물류 신기술 [] 물류 기반시설 [] 서비스 [] 기타	
	주요 내용		
기존 실증특례 확인 내용	확인번호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조건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신청 사유	[] 유효기간의 만료 전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	
기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1부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1부 6.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물류사업등	명칭		
	유형	[] 물류 신기술 [] 물류 기반시설 [] 서비스 [] 기타	
	주요 내용		
기존 실증특례 확인 내용	확인번호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조건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변경 사유	주요 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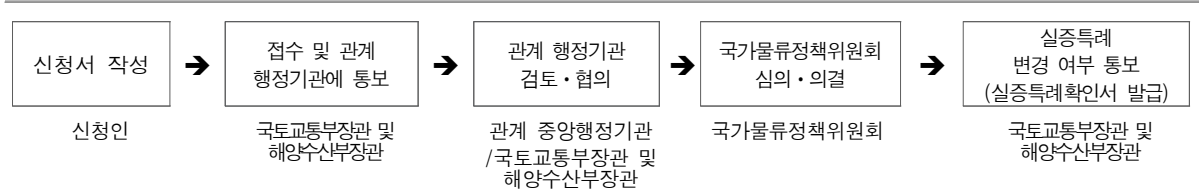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1부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제 호			통보 연월일	
법령 정비 요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규제소관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규제 소관기관/ 담당부서(과)			
	규제 대상 사업 명칭 및 내용			
	규제 법령			
	법령 정비 필요 여부	필요함 [] 필요하지 않음 []		
	검토의견 주요내용(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 검토 결과 등에 대한 소관부처 처리 결과 등)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실증특례 유효기간 계속연장 희망여부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시 실증특례가 종료됩니다.		
사업 명칭			
사업 내용	※ 규제와 관련된 사업 내용 기재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정비 요청 법령	※ 구체적으로 기재 (예. xxxx법 제00조 제00항 제00호,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법령 소관기관	※ 구체적으로 기재 (예. xx부 xx국 xx과)		
규제의 내용 및 정비 필요성	※ 규제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내용 작성(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법령 정비 안	※ 규제법령의 조문 수정 의견 등 기재 (필요시 신·구조문 대비표 등 추가서류 첨부)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비 대상 법령 소관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1부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

요청서 작성	➔	접수	➔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 검토·협의	➔	법령 정비 판단 결과 보고	➔	법령 정비 완료 통보
신청인		법령 소관 기관의 장 /국토교통 부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		법령 소관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법령 소관 기관의 장		법령 소관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법령 소관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16 –

임시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물류사업 등	명칭		
	유형	[] 물류 신기술 [] 물류 기반시설 [] 서비스 [] 기타	
	주요 내용		
신청 사유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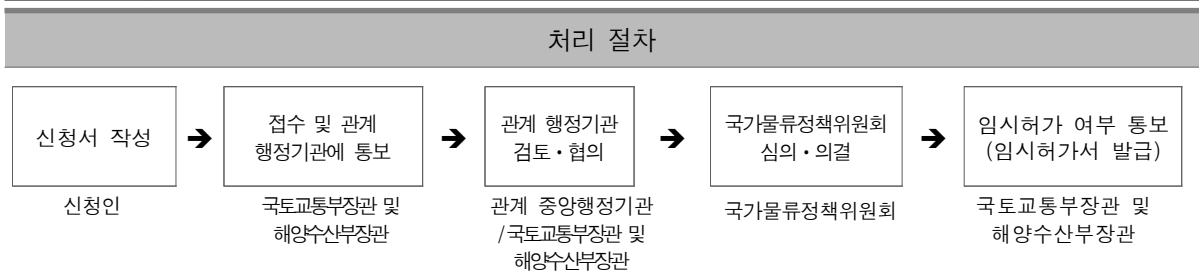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물류사업등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 4. 법 제21조제4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시허가서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임시허가 내용	명칭	
	유효기간	
	주요 내용	
	조건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물류사업등	명칭		
	유형	[] 서비스 [] 제품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기타	
	주요 내용		
기존 임시허가 내용	임시허가 번호		유효기간
	허가조건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신청 사유		
	기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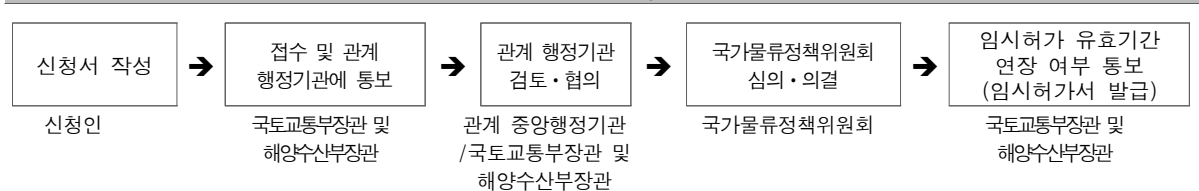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 4. 임시허가서 사본 1부 5. 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물류사업등의 시행 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1부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1부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물류사업등	명칭		
	유형	[] 물류 신기술 [] 물류 기반시설 [] 서비스 [] 기타	
	주요 내용		
기존	임시허가 번호		유효기간
임시허가 내용	허가조건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변경 사유	주요 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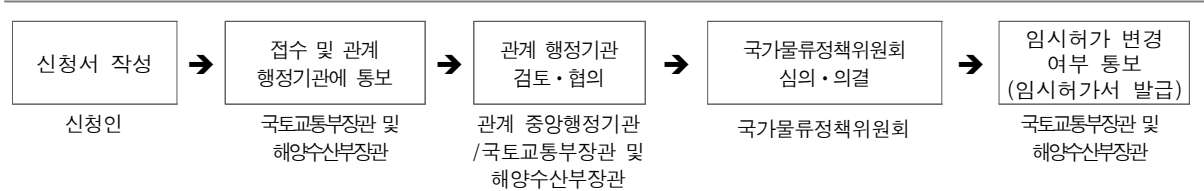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임시허가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1부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정보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지정 여부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지정증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통 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증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증

1. 지정번호:
2. 법인명: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직인

해 양 수 산 부

직인